

환경경영정책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1. 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환경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운영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
3. 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임직원이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환경 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환경경영 인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환경 관련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5. 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경영 성과를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환경경영 실천

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제품 설계, 생산 등의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배출물질,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폐기물, 재활용, 용수사용 및 폐수, 온실가스 배출 등에서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친환경 관련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

가. 환경 인허가 취득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오염물질 관리

회사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원별 기준을 수립하고, 실시간 측정 또는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기치 못한 누출 사고에 대비해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정기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수거·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여 연간 이행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순환자원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위탁 처리업체는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1) 폐기물 관리 계획

회사는 폐기물의 발생, 분류, 저장, 수거, 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폐기물 분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지정폐기물은 독립 보관소에 별도 적정 보관해야 한다.
- 처리 이력 관리: 폐기물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기록·보존해야 한다.
- 처리업체 관리: 위탁업체는 환경부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계약하고, 반기 1회 이상 적격성 및 처리실적을 점검해야 한다.

- 재활용 및 감량화 목표: 연간 재활용률 및 폐기물 감량 목표를 수립하고, 감축 성과를 내외 부 보고에 반영해야 한다.

2) 유해 폐기물 수출입 관련 규정 및 절차

국제 간 유해 폐기물 이동 시 회사는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수출입 사전신고 및 승인: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은 관할 환경부 및 수입국 환경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허가서 사본을 운반자 및 수입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 운송자격 및 적합 용기 사용: 운반은 유해폐기물 운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물질별로 인증된 용기(예: 드럼, 특수탱크)를 사용해야 한다.
- 경로 및 일정 기록: 이동 경로, 통관 서류, 처리 확인서 등 모든 기록을 수출입 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라. 화학물질 관리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하고,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 적절한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취급, 저장, 운반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해당 작업자에게는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에는 사전 위해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고위험 물질은 대체 물질 사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회사는 유해화학물질의 구매, 보관, 취급, 운반, 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제규정(GHS, UN SDS)**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화학물질 등록 및 목록관리: K-REACH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취급물질은 등록해야 하며, 보유 목록은 연 1회 이상 갱신하고 MSDS를 최신화하여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위해성 평가 및 통제: 신규 물질 또는 신규 공정 도입 전에는 사전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고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대체물질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작업자 보호 및 교육: 보호구 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 안전교육(신규자, 정기, 특별)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이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누출,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신고, 복구절차를 포함하는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마. 제품 내 물질 규제 준수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식별표기, 라벨링 등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 사용, 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바. 대기오염물질 관리

회사는 질소산화물(NO_x), 황산화물(SO_x),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배출 농도는 관련 법령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실시간 측정하거나 주기적 분석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고농도 배출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취급 규정 및 절차

회사는 질소산화물(NO_x), 황산화물(SO_x),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기반으로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사전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배출 농도 모니터링: 주요 배출구에는 TMS(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할청에 송신해야 한다.

- 방지시설 유지관리: 흡착탑, 전기집진기, 백필터 등 주요 방지시설은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일별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상대응 체계

회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오작동, 고장 또는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비상 차단 장치 운영: 방지시설 고장 시 배출이 차단되도록 자동개폐 밸브 또는 우회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 압력, 온도, 유량 이상 발생 시 경보가 작동하도록 센서 및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운영 매뉴얼 및 훈련: 사고 발생 시 조치절차(설비 정지, 고장 통보, 응급 복구 등)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 교육과 모의 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점검해야 한다.
- 관계기관 보고체계: 사고 발생 시 1 시간 이내 관할 지방환경청에 유선 보고 후, 5 일 이내 서면으로 사고경위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사.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회사는 사업장 전반에 걸쳐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해야 한다. 연간 단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는 외부 기준(CDP, TCFD 등)에 따라 공시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및 고효율 설비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 수자원 관리

회사는 수자원의 취수, 사용, 방류에 대한 전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해야 하며, 연간 수자원 절감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폐수는 수질오염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내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방류수는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물 부족 지역의 사업장은 물 스트레스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순환수 사용 확대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수 관리 관련 규정 및 절차

회사는 폐수 배출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 준수

- 「물환경보전법」 제정기준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폐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 국제적으로는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 폐수의 국가 간 이동 제한 및 안전 처리 원칙을 따라야 하며, 해외 사업장에서는 현지의 폐수 관련 법규와 ISO 14001 기준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

■ 관리 절차

- 폐수 발생량 산정: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성상, 양, 시간대별 패턴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 배출 전 예비처리:
고형물, 중금속, 유기물 등의 사전 제거를 위한 전처리 설비를 가동해야 하며,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처리 효율을 유지해야 한다.
- 방류기준 점검:
폐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BOD, COD, SS, T-N, T-P 등의 지표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방류 전 자체 수질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 자체 모니터링 및 기록 보존:
수질측정결과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물환경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하고, 결과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계약 위탁 시 주의사항:

외부 처리업체 위탁 시 환경부 등록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에는 ‘폐수의 적정 처리 및 사후 책임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2) 폐수처리 시스템 관련 비상 대응 체계

회사는 폐수처리 시스템의 고장, 과부하, 누출, 정전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비상 대응 체계 구성 요소

- 비상 감지 및 알림 장치 설치:

유량, 수위, PH, DO 등 주요 수질변화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상 징후 시 자동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 비상차단 밸브 및 우회배관 확보:

주요 폐수 배관에는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하고, 유출 시 오염물질이 하천 또는 공공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 배관 또는 저장조(비상조)**를 확보해야 한다.

- 오염물 확산 방지 장비 구비:

유출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흡착포, 방제마대, 응고제 등의 장비를 현장에 상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대응 매뉴얼 운영:

사고 발생 단계별로 역할 분담, 초동 조치, 기관 통보, 복구 조치 등을 포함하는 표준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숙지해야 한다.

- 정기적인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폐수 누출 또는 방지시설 고장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전 직원 및 환경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사후 대응 및 보고 체계: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할 지방환경청 또는 지자체에 1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며, 사고경위 및 재발방지대책서를 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자.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보존 지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또는 확장 사업장 주변의 생태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종 서식지 또는 민감 생태계가 인접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복원 활동 또는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며,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생태계 기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회사는 멸종위기종 및 유전자원의 수집, 보유, 활용과 관련하여 CITES(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나고야의정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한다.

- 멸종위기종 취급 제한: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된 종(CITES Appendix I~III)은 허가 없이는 취급이 금지되며, 국내 반입 시 환경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연구·활용하는 경우 해당국의 동의(PIC) 및 이익 공유 계약(MAT)을 체결하고, 국가 ABS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 보존 및 모니터링: 현장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 보호대상종이 발견되면 해당 구역의 공사를 제한하거나 보존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차. 수은 및 수은화합물 관리

회사는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이 포함된 제품 및 폐기물에 대해 식별체계를 갖추고, 해당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수은 취급 시에는 유출 방지를 위한 밀폐 용기 사용 및 이중보관을 시행해야 하며, 수은을 포함한 자재는 무수은 대체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수은 및 수은화합물 관리 규정 및 절차

■ 관련 법령 및 협약: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미나마타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2) 관리 규정 및 절차:

■ 취급 및 등록 관리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제품(형광등, 온도계, 혈압계 등)을 구매, 취급할 경우 해당 물질을 **화학물질 통합등록 시스템(K-REACH)**에 등록하고, MSDS를 최신 상태로 비치해야 한다.

■ 수은 포함 여부 사전 검토

신규 원자재나 부품 도입 전 수은 함유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무수은 대체물질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보관 및 운반 절차

수은화합물은 밀폐용기에 담아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요건(방류방지턱, 환기시설 등)**을 충족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전용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 폐기 시 지정폐기물로 분류

수은 또는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별도 용기에 담아 위탁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경로는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에 기록하여 추적 가능해야 한다.

■ 교육 및 훈련

수은 취급 작업자는 연 1회 이상 위험성 및 누출대응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고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회사는 POPs에 해당하는 물질의 구매, 사용, 보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스톡홀름 협약 및 국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보유 중인 POPs는 고온 소각 등의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안전한 폐기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2) 관리 규정 및 절차

- POPs 포함 여부 조사 및 등록
제조·수입·유통 제품에 대해 POPs(예: PCB, PCDD, PFOS 등) 포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부 지정 대상일 경우 등록 및 사용금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사용금지 및 대체물질 사용
스톡홀름협약 대상 POPs는 원칙적으로 사용 및 생산이 금지되어 있으며, 가능한 경우 대체 물질을 도입해야 한다.
- 보유 POPs의 안전 보관
잔존하는 PCB 변압기, 절연유 등은 밀폐용기 및 별도 보관소에 격리 보관하고, 누출감지기 및 흡착포 등 대응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 POPs 폐기 절차
고온소각(1,200도 이상 등 국제 기준 충족)에 의한 폐기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외부 위탁 시 환경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 기록 관리 및 공시 대응
POPs의 취급, 보관, 처리 관련 문서는 5년 이상 보관하며, ESG 보고서 및 GRI 306 등에서 요구하는 공개 지표에 따라 외부 공시를 위한 관리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타. 해양 오염 방지

해상 운송, 항만 물류 등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선박 연료, 적재 화물, 유해물질 누출 등에 대해 환경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IMO 규정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박 운영 시에는 저유황 연료 사용, 오염물 회수 설비 설치, 선박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유류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절차와 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협약:

- 「해양환경관리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
- MARPOL 협약(Marine Pollution Convention)

2) 관리 규정 및 절차:

- 오염물질 해양 배출 금지 및 사전 예방
폐수, 폐유, 잔여화학물질, 고형물 등의 해양 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사업장 또는 선박에서는 오염물질을 육상 회수 시스템으로 적정 처리해야 한다.
- 오염물 회수·보관 설비 운영
항만, 조선소, 해양 플랜트 등에서는 오염물 회수함, 오일뿔, 흡착포 등 오염 확산방지 설비를 항상 비치하고 정기 점검해야 한다.
- 해상 운송 시 연료유 기준 준수
선박 연료유는 국제기준(MARPOL Annex VI)에 따라 저유황(0.5% 이하)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고유황 연료 사용 시에는 스크러버 장착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운영
해양오염물질 유출 시 즉시 오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하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에 1시간 이내 유선 보고, 5일 이내 사고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종사자 교육 및 훈련
해상 작업 종사자 및 해양화물 운송 종사자는 해양오염 대응 및 비상절차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유출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24. 12.

주식회사 스마일푸드 대표이사 손희영